

의안번호	제510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3월 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3월 5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 심의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(안 제4조)
-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~제7조)
- 적극행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반영(안 제6조)
- 위원 해촉 사유 추가(안 제10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적극행정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
제5조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”로, “연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재적의원”을 “제2항에 따른 구성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지원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</u>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<u>위원</u>은 충청북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</p>	<p>제4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적극행정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
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-----  
-----  
----- 연 2회 -----  
-----.

③ ----- 제2항에 따른 구성원 -----  
-----  
-----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-----  
-----

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  
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민  
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  
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----- 위원회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의 해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 
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 
경우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-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

제10조(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2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3.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
3의2.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
4.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,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

2. 시·군·구의 경우: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의3(위원의 해촉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